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33

2025. 11. 26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11. 6. 우종혁 의원 등 6인

나. 상정의결

-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6.) **“수정가결”**

2. 제안설명 요지(대표발의자 : 우종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함 (안 제24조 신설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
○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□ 우종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과 가정 양립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안 제24조(일·가정 양립 지원)를 신설하여 관련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
□ 입법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,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생·고령화,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,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,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, 관련 지원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 사료됨.

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4조에 일·가정 양립에 관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(제1항),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제2항),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업 우대에 관한 사항(제3항),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(제4항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□ 한편,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‘2025 결혼, 출산,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’에 따르면 향후 저출생 대응 중장기 추진 과제 중요도에서는 ‘주거지원(82.9%)’, ‘일·가정양립 문화정착(81.3%)’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조사되었는바, 이러한 결과는 일·가정 양립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중 하나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보임. 또한, 2024년 말 기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 수는 직전 연도 대비 10% 증가한 6,502개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.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·가정 양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바, 본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

과 지원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.

특히, 실질적 일·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 근거를 마련(안 제24조 제2항 및 제3항) 점은 타당하다 사료되며,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기업 등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(예시: 중소기업 융자지원 등)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□ 그 밖의 안 제24조제2항에서 “기업 · 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” 고 규정하였는데, 지원 대상으로서 “지역” 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.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대해서는 가족친화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우대 기업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수정 의견으로 제시하는바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24조(일·가정 양립지원) ② 구청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일·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의 내에서 기업·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 ③ 구청장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.	제24조(일·가정 양립지원) ② 구청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일·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·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1. ~ 5. (개정안과 같음) ③ 구청장은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
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